

의 정 정 보

2007 - 5

5. 10

📄. 최근 선거법 관련 질의·회신 자료	1
📄.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6
📄.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 관련 동향.....	28
📄. 법무부의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동향.....	40
〈부록〉 : 행복한 책읽기	50

최근 선거법 관련 질의·회신 자료

1]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애인방송 출연 관련

〈질 의〉

귀 선거관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복지TV는 장애인의 방송권과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자막·화면해설서비스를 24시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TV는 방송위원회로부터 공익성채널로 선정되어 현재 전국의 케이블망을 통해 800만 가구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2007년 6월 1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를 통해 송출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현 실정은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은 시설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지TV가 각 지역에 있는 도로 및 건물 등의 시설물들을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및 스타들과 함께 출연시켜 그 지역곳곳을 장애인의 시선에서 직접 체험을 통해 하나하나 짚어가며 제조명하는 “출동! 사랑만들기”(가제)라는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할 예정입니다. 체험을 하면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느낀 불편한 점을 단체장에게 시설보완을 약속받고 또한 그 시설에 가서 “희망나눔 인연맺기”를 진행하며 어울리는 모습을 화면에 담아 장애인도 소외되지 않은 사회의 일원이라는 인식도 시켜주고,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가지게 만드는 계기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아 선거법 저촉 여부를 묻고자 질의합니다.

※ 복지TV방송은 장애인과 노인복지사업의 제반지원과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사단복지법인 공동리복지재단의 산하기관으로서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의 실현을 위하여 24시간 수화·자막·화면해설방송, 드라마·뉴스·다큐 등의 장애인용 재제작·방영, 수화뉴스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장애인전문채널임.

1.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위 프로그램에 출연가능여부
2. 지방자치단체(구·시·군)에서 위 프로그램 제작비용 협찬 가능여부
3. 프로그램 제작 후 방영가능여부 (2007. 4. 18. 사회복지법인 공동리복지재단 (주)희망복지방송 대표이사 질의)

《답 변》

1. 문 1·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함.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의 방송출연제한에 관하여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0조(후보자 출연 방송 제한등)의 규정을 참조하기 바람.

2. 문 2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애인복지단체의 사업이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의한 행위로서 무방할 것이나, 귀문과 같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연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단체의 사업이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제공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방송출연을 지원하기 위한 행위가 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상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될 것임. (2007. 4.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2] 창당대회 고지벽보 관련

《질 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중앙당 창당대회 및 시·도당 창당대회를 준비하면서 관내에 아래 예시와 같은 내용의 고지벽보를 게시할 수 있습니까? 또한 행사장 주변(주변은 어디까지인지?)에 같은 내용의 행사장 안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 해석하여 주십시오.

(예시)

○○○당(가칭) 경기도당 창당대회

일 시 : 년 월 일 시

장 소 : 경기도 ○○시 ○○체육관

주 최 : ○○○당(가칭) 경기도당창당준비위원회

※ 창당대회 개최예정일 : 2007. 4월 말 ~ 5월 초

2. 공선법 제140조제2항의 “.....창당대회 등의 장소에 5매이내의 표지를 게시할 수 있다.....”의 규정중 창당대회 등의 장소라 함은 행사장 외부 어디까지 게시가 허용되는지 해석하여 주십시오.

3. 위 두가지 사항에서 예시 내용에 선거와 관계없는 일반적인 정당 슬로건이 포함되어도 되는지 해석하여 주십시오(예문 : 통합을 위하여!) (2007. 4. 18. 정병조 질의)

《답 변》

1. 문 1·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같음)전에 개최하는 창당대회는 「공직선거법」 제90조·제93조제1항 및 제140조제2항의 규정으로 미루어 볼 때 귀문과 같은 내용의 고지벽보를 선거일전 120일전에 거리 등에 첩부하거나 고지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전에 게시하는 것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 상 무방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당해 행사장의 입구나 외벽면·옥상·담장 등에 게시할 수 있을 것임. (2007. 4.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③ 인터넷신문 창간 축하 배너광고 관련

《질 의》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사에서 발행하는 <레디앙>(www.redian.org)은 인터넷 신문입니다. 저희 매체의 창간 1주년을 맞아 현역 정치인들이 축하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지, 현행 법안에 관련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광고형태는 홈페이지상의 배너광고로 게재기간은 약 15일로 예상합니다. 가능여부를 회신 부탁드립니다.

※ 배너광고에 정치인의 홈페이지를 링크시킬 경우 위반 여부

2. 가능한 경우라면 광고료는 100만원 미만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도 금액의 범위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2007. 3. 23. (주)레디앙미디어 대표이사 이광호 질의)

《답 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일전 180일 전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홈페이지 등으로 연결되도록 설정하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함이 없이 통상적인 신문창간 축하광고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광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통상적인 광고요금의 범위내라면 무방할 것임. (2007. 4.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4 입후보예정자의 종교단체 자선음악회 기부금제공 관련

《질 의》

공명선거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귀 기관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정당 내 경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후보자가 한센병 가족들을 위한 사회사업을 하는 성라자로 마을의 제25회 자선음악회 ‘그대 있음에’에 금품을 기부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기부금을 낼 경우 행사당일 발간되는 책자에 기부자의 명의(직·성명, 세례명)와 함께 자선음악회 축하메시지(기부금액의 다과에 따라 크기나 컬러·흑백 등 다른 종류의 의례적인 축하문구 광고)가 실립니다.

《자선음악회 개요》

- 주 최 : 성라자로마을
- 공연명 : 제25회 자선음악회 「그대 있음에」
- 일 시 : 2007년 5월 19일(토요일) 오후 4시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출 연 : 국내의 최정상의 음악인
- 수익금 활용 : 열악한 환경의 국내외 한센병 가족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

※ 성라자로마을 : 무의탁 한센병(나)환우들의 치료와 치유된 환자들의 사회복귀 및 자활을 마련해 주고자 1950년 6월 2일에 설립된 한국 천주교 최초의 구라사업 기관임.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에 위치한 마을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약한 한센병 병력자 80여명이 라자로돕기회원들의 도움을 받아 요양하며 생활하고 있음 (2007. 4. 10. 국회의원 주호영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 자선사업을 주관하는 종교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 마목에 따라 무방할 것이며, 축하광고를 게재하는 때에는 게재내용과 방법 등에 있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전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2007. 4.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5 정치자금으로 대학에 기부 가능여부 관련

《질 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에는 정치자금에 대하여 “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 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사적 경비의 의미를 “(i) 가계의 지원·보조, (ii)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iii) 향우회·동창회·종친회·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의 회비 그 밖의 지원경비, (iv) 개인적인 여가 또는 취미활동에 소요되는비용”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이 정치자금을 사용하여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 기부금을 제공하는 것은 사적경비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이 KAIST에 1,0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는 행위가 본 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KAIST에 1,0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는 행위가 본 법에 위반된다면 그 근거조항이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2007. 4. 9. 국회의원 홍창선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이 법령의 규정에 근거함이 없이 대학교에 기부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정치자금법」 제2조제3항에 위반될 것임. (2007. 4. 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회답)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①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0044호, 2007.5.2공포]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에게 연간 일정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법률 제8172호, 2007. 1. 3. 공포, 2007. 4. 4. 시행)됨에 따라 교육훈련시간을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종전의 교육훈련 평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실적의 인사관리 반영방법 개선(안 제8조의3 신설, 안 제32조제1항, 현행 제38조의3 후단 삭제)

-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되어 지방공무원에게 연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이수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승진 등 인사관리에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2)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에 전체 평정점의 2할을 부여하던 교육훈련평정점을 삭제하고, 근무성적평정점의 배점비율을 종전 5할에서 7할로 상향 조정하며, 교육훈련시간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함.
- (3)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상시학습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교육훈련에 따른 결원보충 제도의 보완(안 제27조의3제2항)

- (1) 1년 이상의 교육훈련과정에 한하여 결원보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와 가사를 부담하는 여성공무원들의 장기교육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결원보충이 가능한 교육훈련기간의 조정이 필요함.

- (2) 1년 이상 교육훈련과정에 한하여 인정하던 결원보충을 여성간부공무원 양성과정의 경우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과정의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3) 여성공무원을 위한 6개월 이상의 중기교육훈련과정 운영을 통하여 지방 여성공무원들에게 교육훈련 및 능력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3, 제32조제1항, 제38조의3 후단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20040호, 2007.5.2공포]

1. 개정이유

학교별 특성에 따라 교사(校舍) 기준면적을 일정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빌딩형 학교 및 도심형 소규모 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부지 구입비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시·도교육감이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 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학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사시설의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항 단서 신설)

- (1) 학교별 특성 등과 무관하게 획일적인 학교 설립기준을 설정·운영함으로써, 도심지의 경우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학교 설립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일부 지역의 경우 학교 공급 부족 및 학급 과밀화를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 (2) 각급 학교의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면적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과 학교별 특성이 고려된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이 가능하고, 학교 공급 부족 및 학급 과밀화 등의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학교에 복합시설을 둘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조의2 신설)

- (1) 학교 부지에 지역 기반시설이나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복합시설을 설치하여 학교부지 구입비 및 건축비를 절감하려고 하나, 근거 미비로 학교에 복합시설 설치가 어려움.
- (2) 시·도교육감이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 및 복지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학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3) 학교부지 구입비 및 건축비의 절감으로 국가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교사시설의 기준면적 산출기초를 합리적으로 조정(안 별표 1)

- (1) 동일 고등학교에 2 이상의 계열이 있는 경우와 동일 구내에 2 이상의 각급 학교가 위치하는 경우 그 중 소요면적이 많은 계열 및 학교를 기준으로 소요면적을 각각 산출하도록 함으로써, 소요면적이 과다책정되는 문제점이 있음.
- (2) 각 계열별 기준면적 및 각급 학교별 기준면적을 별도로 산정하여 각각의 면적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함.
- (3) 산출기초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실제 소요와 동일한 기준으로 면적이 산출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제383호, 2007.5.1공포]

1. 제정이유

「도로교통법」의 개정(법률 제7936호, 2006. 4.28. 공포, 2007. 4. 29. 시행)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車馬)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시설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조)

- (1)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복지시설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 (2)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노인복지시설의 설립·운영자의 건의 를 받아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3)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교통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 마련(제11조제3항부터 같은 조 제5항까지)

- (1) 보호구역 지정 후 시설물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호구역 의 존치 필요성이 적어진 경우 구역해제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안전표지 등이 훼손된 경우 경찰서장에게 통 보하도록 하고, 노인복지시설의 폐원(閉院)으로 인하여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3) 노인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④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8409호, 2007.4.27공포]

1. 개정이유

허위·부실 감정평가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 자격등록제도를 도입하고, 감정평가법인이 하는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의 회 계처리방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 강화(안 제24조제3호 및 제4호, 안 제24조제5호 신설)

- (1) 종전에는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를 “이 법에 의하여 징역의 형의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하던 것을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강화함.
- (2) 결격사유가 강화되어 부적격한 자가 감정평가사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감정평가사 자격등록제도 도입(안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 신설)

- (1) 종전에는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는 행정관청에 별도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감정평가업무를 할 수 있었으므로, 감정평가사 자격 취득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었음.
- (2)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가 감정평가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마다 그 자격을 갱신하여 등록하도록 하여 적격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받도록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하도록 함.
- (3) 행정관청에 의하여 적격 여부가 주기적으로 검증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감정평가법인의 회계처리방식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28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 (1)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의 회계처리방식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감정평가법인의 회계가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되는 문제가 있었음.

- (2) 감정평가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고, 매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도록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재무제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3) 감정평가법인이 하는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절차 신설(안 제42조의2 신설)

- (1)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그 자격을 등록하게 하는 등 감정평가사의 적격성에 대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엄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2) 건설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하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나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안 제42조의3부터 제42조의6까지 신설)

- (1)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공공성이 강화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필요로 하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2) 건설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 등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제8403호, 2007.4.27 공포]

1. 제정이유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치매·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렵고 그 가정의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노인장기요양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노인의 간병·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안 제5조)

국가는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국민이 장기요양급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나.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징수 등(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1) 장기요양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 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와 구분하여 통합 징수하되, 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도록 함.
-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및 징수절차를 명확히 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부과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안 제12조)

- (1)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자격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함.
- (3) 장기요양급여를 필요로 하는 노인 및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에게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 (1)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고,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정 등에서 장기요양하는 재가급여를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으로 세분하며, 시설급여는 수급인을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입소시켜 장기요양하는 것으로, 특별현금급여는 수급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현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
-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구분하고 급여를 선택하여 이용하게 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상태와 가족상황 등에 따른 적절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함.

마.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등(안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 (1)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시설이나 인력을 변경하거나 휴·폐업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3)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를 신고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봄.
- (4)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과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안 제40조)

- (1)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 (2) 수급자는 재가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부담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은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함.
-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담능력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차등화 함으로써 이들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장기요양위원회 설치 등(안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 (1)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장기요양위원회를 두고,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자단체 및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 등의 대표자 등을 중심으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장기요양보험료율 등을 심의하도록 함.
- (2)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장기요양위원회에 이해관계자 및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참여시킴으로써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정책결정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관리운영기관(안 제48조 및 제49조)

- (1) 장기요양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사업을 관리·운영하고 평가할 기관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징수,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 대한 조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함.

-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산망과 전국조직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함.

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52조 및 제53조)

- (1)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둔다.
- (2)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은 1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각각 포함되도록 함.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안 제58조)

- (1) 장기요양사업비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 (2)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도록 함.
- (3) 치매·중풍 등으로 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의 복지증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제3장(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제23조제2항 중 장기요양요원에 관한 사항, 제6장(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제8장(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9장(제54조를 제외한다), 제10장(제55조부터 제57까지), 제11장(제58조를 제외한다), 제12장(제67조부터 제70조까지)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⑥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8396호, 2007.4.27공포]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에게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권고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무시간 단축 임용제의 도입, 개방형직위의 지정대상 범위의 확대 및 직위공모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무등급의 개념 도입(안 제22조)

- (1) 사람과 계급중심의 인사제도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수요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인사제도에 직무 중심적 요소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2)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직무등급으로 하고, 직군·직렬·직급 이외에 직무등급별로도 직위를 분류할 수 있도록 함.
- (3) 직무등급 개념의 도입에 따라 직무분석의 실시 및 직무등급에 따른 보수지급 등이 가능하게 되어 인사관리의 합리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직무분석의 실시근거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직무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별 직무등급과 자격요건을 분석·설정하는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장애인·이공계 전공자 등에 대한 우대 및 실질적 양성평등 정책 근거 마련(안 제25조 단서 신설)

장애인 및 이공계 전공자 등 공직내의 소수집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전보·승진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라. 부분근무 공무원의 임용(안 제25조의3 신설)

- (1)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부분근무 공무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의 사정,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3) 근무시간 단축 임용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출산 및 육아휴직 등의 활성화와 탄력적인 인력활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마. 개방형직위 지정대상 범위의 확대(안 제29조의4제1항)

유능한 인재의 확보를 통하여 자치단체의 인적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도의 5급 이상 직위에만 운영되던 개방형직위제를 시·군·구 6급 이상 직위까지 확대함.

바. 공모직위제 도입(안 제29조의5 신설)

- (1) 지방자치단체 내부 공무원 위주의 폐쇄적인 인사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의 경쟁을 통하여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직위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2) 당해 지방자치단체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 이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3) 당해 지방자치단체 내외의 경쟁을 통하여 적임자를 선정함으로써 지방공직사회의 경쟁 분위기를 확산하고, 폐쇄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육아휴직 대상의 확대 및 결원보충 요건의 완화(안 제41조제1항 단서 신설, 안 제63조제2항제4호 및 제64조제7호)

- (1)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2) 육아휴직 결원보충 요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요건을 3세 미만인 자녀의 양육에서 만 6세 이하의 취학 전 자녀의 양육으로 변경하는 한편, 현재 1년의 육아휴직기간을 여자공무원의 경우에는 3년으로 확대함.
- (3)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3조제2항제4호 및 제64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법률제8394호, 2007.4.27공포]

1. 제정이유

성폭력범죄는 재범의 개연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성폭력범죄자 중에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출소 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여 그 행적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인 성폭력범죄의 범위(안 제2조제1호)

- (1) 「형법」에 따른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간추행 및 그 미수범,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강도강간을 한 죄 및 이와 같은 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를 대상 범죄로 함.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강도강간등, 특수강간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장애인에 대한 간음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및 그 미수범,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을 한 죄 및 이와 같은 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를 대상 범죄로 함.

- (3)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을 한 죄 및 이와 같은 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를 대상 범죄로 함.

나.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등(안 제4조·제5조 및 제12조)

- (1) 검사는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법원에 유기징역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2)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도록 함.
- (3) 법원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도록 함.

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가해제(안 제17조)

- (1)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전자장치 피부착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거나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가해제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2)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인격, 생활태도, 부착명령 이행상황 및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 후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부착명령을 계속 집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⑧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20036호, 2007.4.27공포]

1. 개정이유

고령자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의 지원 대상 인원수를 늘리고, 임신·출산·육아문제로 이직한 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도입하며,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 여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급여액을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 지원 대상 인원의 확대(안 제15조의5제2항)

- (1) 현행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신규로 고용하거나 다른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는 전문인력의 수가 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3인에 한하여 전문인력 활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어 퇴직한 고령의 전문인력은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문제가 있음.
- (2) 전문인력 활용장려금의 지원 한도(3인)를 모두 채운 기업이 50세 이상인 전문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아 사용함으로써 전문인력의 수가 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인까지 전문인력 활용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함.
- (3)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전문인력 부족현상을 완화하고 퇴직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나.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의 개선(안 제22조의5)

계약직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산전후휴가 중이거나 출산이 임박한 임신 34주 이상의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여성근로자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즉시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의 지급대상자를 임신 16주 이상의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여성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로 확대함.

다. 장기실업자 등에 대한 창업촉진 지원사업(안 제23조의5 신설)

- (1) 2005년 12월 7일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노동부장관이 장기실업자등의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창업촉진 지원사업의 대상자 및 지원사업의 내용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피보험자이었던 실업기간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 및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가장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점포임대 등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3) 장기실업자 등에게 생계형의 소규모 자영업을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라. 육아휴직급여액의 인상(안 제68조의3 제1항)

육아휴직기간 중의 소득 감소는 육아휴직을 하지 않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육아휴직급여액을 현행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함.

마. 산전후휴가급여등의 감액제도 개선(안 제68조의12)

- (1) 현행은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기간 중에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과 산전후휴가급여등(통상임금에 상당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여성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산전후휴가급여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어 노사 양측의 불만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음.
- (2) 산전후휴가급여등에서 감액되는 대상 금품을 통상임금으로 한정함으로써 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되지 않도록 함.
- (3) 통상임금이 아닌 금품은 산전후휴가급여등에서 감액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바. 신규고용 촉진장려금의 개선(안 별표 1 제8호 신설)

재취업이 쉽지 않은 임신·출산 및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한 여성 실업자를 새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신규고용 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3항, 제17조의3제1항·제2항 및 제1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법률제8384호, 2007.4.20공포]

1. 개정이유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 보상을 노린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도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는 지역에 포함시키고,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제도를 도입하며,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에 대한 전매차익을 차단하기 위하여 택지의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택지개발기간을 단축하여 주택공급을 조기화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행위제한 대상지역의 확대(안 제6조제1항)

토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안에서도 토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와 같이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

나.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제도의 도입(안 제7조제1항제4호)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 등 사업자는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개발예정지구안의 토지면적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익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다. 택지개발사업 관련 절차 간소화(안 제8조, 제9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 (1)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과 택지개발계획의 수립을 일원화함.
- (2)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택지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택지공급에 관하여 따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함.

라. 택지의 전매행위제한 등 (안 제19조의2 신설)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해당 택지를 전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당해 택지를 전매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당초의 택지공급자가 해당 택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조의2·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법률제8383호, 2007.4.20공포]

1. 개정이유

신규 분양 공동주택의 분양가 인하와 분양가의 투명한 책정을 위하여 기존에 공공택지에서 시행하고 있던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확대하고, 사업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매할 경우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해제절차를 개선하고, 주택관리사단체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택지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3호의2마목 및 바목 신설)

공공택지의 범위에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도 포함시키도록 함.

나. 택지전매금지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제재(안 제13조제1항제6호의2 신설)

「택지개발촉진법」상에 택지 전매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이를 그대로 전매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벽지·바닥재 등을 제외한 주택공급가격의 별도 제시의무(안 제38조제1항제3호 신설)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별도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라.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 확대 등(안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 (1)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에도 적용하도록 함.
- (2) 분양가격은 택지비 및 건축비로 구성하고, 구체적인 내역,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의 택지비는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3)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의 택지비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매입가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경·공매 낙찰가격 등의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볼 수 있도록 함.
- (4)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건축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기본형건축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마. 택지비 등의 분양가격 공시(안 제38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 (1)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은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세분류를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함

(2)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모집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하도록 함.

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안 제38조의4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모집을 승인하기 전에 분양가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사.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공급(안 제38조의5 신설)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아. 투기과열지구의 지정해제(안 제4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받은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40일 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43조제1항)

「건축법」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도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차.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등(안 제55조의2 및 안 제81조의2 신설)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에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3호, 제38조의2, 제38조의4, 제38조의5, 제41조, 제97조제8호의2, 제97조의2 및 제102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1일부터 시행하고, 제43조, 제55조의2 및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20009호, 2007.4.19공포]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8250호, 2007. 1. 19. 공포·시행)에 따라 신도시 건설 등 국가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국가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최소 규모를 정하고, 계획관리지역내에서의 용적률의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의 확대를 기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정책사업의 추진을 위한 국가계획의 규모 구체화(안 제17조의2 신설)

- (1) 법률에서 국가정책사업의 추진을 위한 국가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하도록 하고, 그 국가계획의 규모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2)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으로 추진되는 국가정책사업의 최소규모는 신도시 계획수립에 있어서 고려되는 신도시 규모 등을 감안하여 330만제곱미터로 함.

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 상향조정(안 제47조제1항)

- (1)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 안에 있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용적률을 150퍼센트 이내로 규제하고 있어 수익성 부족 등의 이유로 민간 주택공급이 급격히 감소하는 문제가 있음.

- (2)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 중 개발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지역이고,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적정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하므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완화 비율의 상한을 150퍼센트에서 200퍼센트로 상향조정함.
- (3) 도시화가 예정된 비도시지역내에서 치밀한 개발계획을 전제로 하여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주택공급의 확대가 기대됨.

다. 생산녹지지역 중 동(洞)지역에서의 첨단업종 공장의 신·증설 허용(안 별표 16)

- (1) 도시지역내 생산녹지지역에 입지할 수 있는 첨단업종 공장의 경우에 읍·면 지역에는 허용되고 동(洞)지역에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있는바 환경친화적이거나 공해 발생이 적은 첨단업종 공장은 동지역에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2) 생산녹지지역 중 읍·면지역에서만 허용되었던 첨단업종 공장의 신·증설을 동지역에서도 허용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 : 법제처, <http://www.moleg.go.kr/>]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 관련 동향

① 정보화마을 운영내실화 역점 추진 관련

-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올해 정보화마을 조성 대상지역으로 **31개 지역(별첨1)**을 선정하여 연말까지 조성(총 337개 마을)하면서, 이와 함께 **운영이 부진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선정해제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 올해 선정된 31개 지역은 시군에서 신청한 110개 지역 중에서 도의 자체평가를 거쳐 행자부로 추천된 지역에 대해 마을주민 인터뷰 등 현지실사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주로 정보화에 소외된 농·산·어촌에 위치한 지역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주민참여가 적극적이며, 정보화를 통한 마을발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 자립 운영의 의지도 높은 지역이다.
- 특히, 금년도의 경우에는 타 부처 농어촌 사업과 연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선정된 31개 지역 중 25개 지역(80.6%)은 농림부(녹색농촌체험마을), 해수부(어촌체험마을), 농진청(전통테마마을), 자치단체(새농촌건설운동, 지역특화사업) 등이 지원한 테마마을로
 - **농촌체험 기반시설이 이미 갖추어져 있고 마을환경정비가 완료되어 정보화마을사업과 결합될 경우 소득증대 등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 행정자치부는 정보화마을 조성과 함께, 매년 주민 정보화교육, 운영위원회 참여도, PC활용, 마을홈페이지 운영실적, 마을운영 활성화 의지 등 평가지표에 의거 **마을운영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평가결과, **운영이 부진한 마을은 컨설팅 등 마을운영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컨설팅 이후에도 **운영성과가 미흡하거나 운영활성화의 가능성이 희박한 마을은 선정해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 금년도에는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18개 컨설팅 마을(별첨2)에 대상 마을에서 수립한 “**운영활성화 세부추진계획**”과 **현지실사결과**를 토대로 운영활성화 가능성이 낮은 마을은 선정해제 또는 개선권고를 추진하고
 - 내년부터는 매년 운영평가결과 **하위 5%에 연속 2회 또는 3년 이내 2회 이상 포함되는 마을에 대하여 컨설팅지원 → 컨설팅결과에 대한 현지실사 → 선정해제 등 평가환류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 행정자치부에서는 그동안 정보화마을에 대한 **상시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 금년부터 전국 정보화마을 마을정보센터에 **상주 근무하는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여 마을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 이들을 통해 마을정보센터관리, 주민정보화교육, 전자상거래와 체험관광 지원, 마을홈페이지 관리 등을 전담하도록 하여 운영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는 운영활성화를 위해 (사)정보화마을중앙협의회와 공동으로 전국의 마을운영위원장들의 의지를 모으는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촉진대회**』를 5월9일에 개최한다.
- 이번 대회는 최근 언론으로부터 운영이 부진한 일부 마을에 대한 **부정적인 지적에 대해 자성하고 전체 정보화마을의 참모습을 알리며 마을주민 스스로 마을운영 활성화를 촉진하고 자립운영의 의지를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동안 정보화마을 운영이 정착됨에 따라 **마을특산물 전자상거래 (www.invil.com) 판매실적과 농촌체험관광(tour.invil.com) 이용실적이 매년 대폭 증가하여 주민소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별첨3)**
- ※ 특산물 판매실적 : '04년 10억 → '05년 15.7억 → '06년 24.1억(연평균 54%씩 증가)
 - ※ 농촌체험관광 : '05년 1.4억 → '06년 5.7억원(280% 증가)
 - ※ 오프라인(특산물 및 체험관광) 판매실적('06년) : 167억

- 주민들의 인터넷 사용시간(12.3시간/週)도 도시지역 평균 사용시간(13.3시간/週)에 근접하고 있어 정보화마을 주민들의 정보이용 생활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 국외적으로는 현재까지 세계 70여개국 1,300여명의 고위공무원이 정보화마을을 방문하고, 2006.10월 프랑스에서 개최된 세계전자정부포럼에서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농어촌 정보화의 우수사례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 또한, 2006.5월과 10월 2회에 걸쳐 UN관계자가 정보화마을을 방문하여 선진국과 개도국간 격차 해소사업인 새천년 프로그램(MDG :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협력사업의 하나로 추진을 검토하는 등 국제적으로 정보화 격차해소의 우수사례로 인정받고 있는 사업이다.
-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마을운영 우수마을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운영부진마을에 대해서는 선정해제나 개선권고 등 차별화된 조치를 통해 정보화마을 운영내실화를 기해 나가면서
- 금년 5월에 중국 심양시에서 개최하는 “07 심양한국주” 행사기간중 정보화마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적인 전자정부 홍보행사 및 회의에 적극 소개하여 정보화마을사업을 국제적인 벤치마킹 사례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 붙임 : 1. 2007년도 정보화마을 선정지역 기본현황
 2. '06년 컨설팅 정보화마을 현황
 3.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현황

< 별첨 #1 >

2007년도 정보화마을 선정지역 기본현황

일련 번호	신청기관			주 제	마을 현황		마을주소	중앙부처 등 지원사업현황
	시도	시군구	마을이름		대표테마	가구		
계					3,202	7,985		
1	경기	화성	백미리마을	관광집약형 어촌체험 및 상품판매 (바지락등 조개류, 활어, 쌀, 포도)	90	270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	갯벌체험마을(07, 해수부)
5	경기	양주	맹골마을	체험(화훼, 조각, 유가공)	50	150	양주시 남면 애곡리	절경지역특화마을사업(06~08, 행자부)
2	경기	가평	아홉마지기 마을	농산촌체험 찰조, 사과, 울추구곡, 연인산	130	298	가평군 가평읍 승안2리	녹색농촌체험마을(06, 농림부) 농촌건강장수마을(06, 농진청)
3	경기	양평	고들빼기마을	고들빼기, 표고버섯, 토종꿀	76	168	양평군 양서면 증동2리	-
4	경기	화성	노루마을	농촌체험 및 쌀, 고추, 배, 감자, 고구마	94	202	화성시 장전동 294	-
6	경기	양주	초록지기마을	체험(전통공예, 생태연못)	60	161	양주시 남면 황방1리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05, 농촌진흥청)
7	강원	양구	송서울 오미마을	오리농법향미쌀, 애호박, 태양초고 추, 토종꿀, 화훼, 방산자기박물관 등	96	231	양구군 방산면 오미리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05~06, 농촌진흥청)
8	강원	삼척	덕풍마을	산촌문화(화전민) 체험	92	289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새농어촌건설운동(06, 강원도) 농촌전통테마마을(06, 농촌진흥청)
9	강원	영월	삼곳마을	메주, 된장, 축제	51	115	영월군 증동면 녹전3리	새농어촌건설운동우수마을(02, 강원도)
10	강원	강릉	해살이마을	단오체험(단오와 창포미인) 막사밭체험(사기막골 막사밭)	148	386	강릉시 사천면 사기막리	농촌전통테마마을(05, 농촌진흥청) 백두대간지역활성화자금지원(05, 산림청) 새농촌건설운동(06, 강원도)
11	강원	양양	해담마을	체험관광	69	178	양양군 서면 서림리	백두대간소득지원사업(07~, 산림청) 농촌건강장수마을(05~07, 농진청)
12	강원	정선	백두대간 약초마을	생약초	71	179	정선군 임계면 직원1리, 정선군 임계면 도전1리	신활력사업(06~12, 행자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07~10, 농림부)
13	충북	옥천	신촌그린마을	농촌체험 및 전자상거래	62	130	옥천군 안내면 현2리	녹색농촌체험마을(07, 농림부)
14	충북	증평	인삼길목마을	메주/청국장, 인삼, 옥수수 및 테마공원	84	219	증평읍 송산1리	장이익어가는인삼마을육성(06~07, 증평군) 마을특화자원산업화, 상품화지원사업(06, 증평군) 마을경관만들기사업(07~08, 증평군)
15	충북	청원	고드미마을	녹색농촌체험관광	91	289	청원군 남성면 귀래리	녹색농촌체험마을(03, 농림부)
16	충북	괴산	대학찰옥수수 마을	전자상거래	84	212	괴산군 장연면 방곡리	오지개발사업(02~05, 괴산군) 대학찰옥수수사계절판매사업(05~06, 괴산군)
17	충남	보령	시현포도마을	포도, 포도주	83	168	보령시 남포면 옥서2리	-
18	충남	계룡	쌈채피망청정 마을	쌈채, 피망, 농촌체험	76	199	계룡시 엄사면 광석리	-
19	전북	임실	치즈마을	친환경, 치즈, 사람	86	230	임실군 임실을 금성리	녹색농촌체험마을(03, 농림부) 치즈밸리육성사업(07, 행자부/농림부)
20	전북	고창	도산고인돌마을	전통체험	53	126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	아름마을조성사업(02, 행자부)
21	전남	완도	보길도예송마을	보길도, 윤선도 유적지	95	324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상록수림외과수술및주변정리(02, 완도군) 천연기념물보호석축쌓기(03, 완도군)
22	전남	해남	김치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특산물, 가공품, 친환경농산물	43	86	해남군 북평면 동해리	녹색농촌체험마을(05, 농림부)
23	전남	광양	형제의병장마을	농촌체험	63	163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녹색농촌체험마을(05, 농림부)
24	전남	나주	연화마을	전자상거래 및 농촌체험	73	173	나주시 성북동 12동	-
25	경북	의성	안평자두마을	전자상거래(자두)	97	215	의성군 안평면 기도리	건강관리실신축(98, 의성군)
26	경북	포항	상옥마을	전자상거래 및 체험관광	99	360	북구 죽장면 상옥리	상옥친환경농업지구조성(07, 포항시)
27	경남	산청	대포마을	지리산곶감	69	163	산청군 삼장면	농촌건강장수마을(06~08, 농업진흥청)
28	경남	의령	보천마을	수박, 호박, 고추, 가지	90	190	의령군 화정면 상일리	산촌종합개발사업(99~02, 산림청) 전원마을조성사업(07~08, 농림부) 원예작물브랜드육성사업(07~09, 농림부)
29	제주	서귀포시	구역리마을	친환경농산물	163	401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	영어전용타운조성(07~10, 재정경제부)
30	제주	제주시	대서리마을	어촌관광	617	1,373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
31	제주	제주시	천진리마을	섬 체험	147	337	제주시 우도면 천진리	-

※ 도별 조성 마을수 : 경기 6, 강원 6, 충북 4, 충남 2, 전북 2, 전남 4, 경북 2, 경남 2, 제주 3

< 별첨 #2 >

‘06년 컨설팅 정보화마을 현황

시도	마을명	시도	마을명
인천	강화 낙조마을(2차)	충남	연기 영곡리과일마을(2차)
광주	북구 무등산수박마을((2차)		청양 구기자고추마을(2차)
대전	서구 유성온천구암배마을 (3차)	전북	김제 황토마을(2차)
울산	울주 황우쌀마을(2차)		전주 원동과수마을(1차)
경기	김포 두레마을(1차)	전남	신안 신안배마을(1차)
	파주 산머루마을(3차)	경북	고령 딸기마을(1차)
강원	고성 진부령홀리마을(3차)		영덕 대게마을(2차)
	철원 토성민속마을(2차)	경남	김해 대동화훼마을(1차)
충북	음성 부운마을(1차)	제주	서귀포 월평화훼마을(2차)

< 별첨 #3 >

정보화마을 운영성과

① 정보격차 해소 부문

- 도시 수준의 정보이용환경 개선 및 정보이용 생활화에 기여

구 분	정보화마을 평균		전국 평균	농어촌 평균	비 고
	조성전	조성후			
PC 보급률	21.0%	66.5%	78.9%	43.6%	2005년
인터넷 가입률	8.8%	64.5%	72.8%	23.0%	2005년

- 인터넷 사용시간은 대도시 주민 이용시간에 근접(PC 보급 : 총 22,429대)

구 분	정보화마을 평균	전국 평균	농어업인 평균	비 고
PC 사용시간/1週	15.6시간	-	-	2006.6월 기준
인터넷 사용시간/1週	12.3시간	13.3시간	9.9시간	

② 주민소득증대 부문(www.invil.com)

-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촌체험관광 매출 실적은 최근 3년간 50~60% 증가
- '06년도 오프라인상의 거래실적은 온라인 판매액 보다 5.5배(167억원, '06.12월)

(단위 : 천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마을 수		103	191	280
판매 실적 (증가율)	계	1,021,651	1,718,320 (40.0%)	2,980,821 (73.5%)
	상거래	1,011,292	1,574,616 (55.7%)	2,411,937 (53.1%)
	체험관광	10,359	143,684	568,884 (281%)
오프라인 판매액		-	-	16,763,916

※ 상거래는 인터넷에서 조회·주문·결제까지를 처리하는 온라인 판매와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을 확인후 전화·FAX 등으로 주문하는 오프라인 판매로 이루어짐

③ 국외 평가 부문

- 정보화마을 사업지원 및 해외홍보를 위해 인텔사와 MOU 체결('04.11)
- 『세계전자정부포럼』 행사 참가('06.10.18~20, 프랑스 이시레몰리노市), 정보화마을 사업 소개 및 세계전자정부포럼상(賞) 수상
- UN에서 추진하는 Millennium Development Goals(MDG) 프로그램으로 채택 검토를 위한 UN관계자 정보화마을 방문('06.5월, 10월)
- 아시아, 중남미 등 공무원 마을 방문 지속 증가(~'07.4) : 70개국 1,300명

참고자료1

정보화마을 조성 현황

시·도별 정보화마을 현황

(’07. 1월 현재)

시 도	계	마을 조성현황				
		2002	2003	2004	2005	2006
총 계	306(54)	25(6)	78(3)	88(11)	89(19)	26(15)
서울	1	1	-	-	-	-
부산	4	-	1	2	1	-
대구	2	1	1	-	-	-
인천	1	-	1	-	-	-
광주	4	1	1	2	-	-
대전	3	-	1	2	-	-
울산	4	1	2	1	-	-
경기	53(28)	4(3)	7	13(6)	23(15)	6(4)
강원	40(11)	3(1)	10(1)	10(1)	8(1)	9(7)
충북	16	1	5	4	5	1
충남	34(1)	1	11	10	10	2(1)
전북	34(6)	2	6	9	13(3)	4(3)
전남	36(4)	2	8	14(4)	11	1
경북	42(4)	5(2)	15(2)	11	10	1
경남	21	2	6	7	5	1
제주	11	1	3	3	3	1

※ ()안의 숫자는 시도 자체적으로 조성한 마을수임.

정보화마을 조성 현황

(’07.1월 현재, (*) 표시는 시도 자체적으로 조성한 마을)

시도	마을수 306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5개 마을	78개 마을	88개 마을	89개 마을	26개 마을			
서울	1	강서 개화	-	-	-	-			
부산	4	-	금정 금정산성	연제 토곡빌	강서 솔뚜껑도마도	기장군 임랑해맞이			
대구	2	동구 미대/내동	달성 신당수막	-	-	-			
인천	1	-	강화 나죽	-	-	-			
광주	4	광산 금연	북구 무등산수막	북구 일곡그린큰숲	서구 상무우미아트빌	-			
대전	3	-	동구 산내포도	동구 열린용터	유성 유성온천구암배	-			
울산	4	울주 민등	동구 주전돌미역	울주 황우밭	울주 외고산 옹기	-			
경기	53	파주 통일 김포 두대(*) 군포 오금(*) 양평 천환경(*)	화성 세부모세 포천 포천바섯 이천 도에 연천 38선	광주 남향산성 양평 생태산촌 여주 그린투어	연천 백학정보화 수원 노송하숙(*) 용인 순지(*) 이천 부래미 안산 대부도 평택 채소 여주 팜스테이(*)	파주 산미루 가평 잣 양주 감악산 화성 유라기(*) 양평 향도(*) 안성 과재류(*)	양평 산수유 양평 유기농(*) 양평 마들가리(*) 양평 소리산(*) 양평 보릿고개(*) 남양주 고로쇠 남양주 축령산산촌(*) 가평 반딧불 가평 연인산(*) 포천 숲골 포천 지동산촌(*) 시흥 오이도(*)	여주 해바라기 여주 오감도토리(*) 여주 사슴(*) 이천 장호원복숭아 이천 자체방아(*) 화성 가시리 화성 궁행리(*) 화성 온행나무(*) 용인 학인(*) 양주 천생연분(*) 연천 고려	연천 호랑이배꼽 화성 물꽃 화성 배향리(*) 양평 학곡(*) 양평 미사람(*) 안성 구애농사(*)
강원	40	춘천 솔바우 강릉 갈골한과 평창 계촌(*)	양구 펀치볼 정선 가리왕산 고성 화진포 영월 솔악는 홍천 삼생	철원 토성민속 화진 토고미 회성 밤두둑 삼척 너와 인제 백담(*)	인제 내실악정보화타운 삼척 가시오가피 원주 황산생태 강릉 복사꽃 철원 두루미평화	홍천 동창 양양 송천떡 화천 파도호생태 고성 진부령올리 평창 제방산(*)	강릉 대기리숲 삼척 산양 속초 하도문썩채 양구 국도정중앙배꼽	춘천 섬배 홍천 팔봉참살이 화진 풍산 철원 누에(*)	삼척 고무통화산 강릉 학 홍천 살문(*) 동해 청정산촌(*) 영월 동강꽃대프팅(*) 화진 하늘빛호수(*) 고성 동트른진들(*) 정선 솔들(*) 원주 황둔송계(*)
충북	16	음성 부운	옥천 이원묘목 괴산 청천사담동천 제천 청풍관광	보은 속리산관광 청주 평동전통떡	제천 월악산약초 단양 소백산신촌	충주 수안보휴양 청원 창개구리밭	괴산 조령산체험 영동 황산포도 단양 황토욕족마을	옥천 배마우정정 증평 증안골정보화	진천 꽃이피는
충남	34	금산 인삼/약초	연기 영곡리과일 논산 강정갯갈장터 부여 석성바섯 예산 창소죽파 당진 밤호박/도마도 홍성 문당환경농업	금산 추부갯길 청양 구기자/고추 공주 정안밭돌이 아산 아산배 서천 동백꽃	논산 강경포구사이버타운 아산 스마트 태안 채색포꽃계와대하 연기 청라정정 청양 칠갑산가과	당진 영진황도배 서산 춘원오이 천안 입장거봉 서천 해진이,해돋이 예산 증실골사과	홍성 용봉산체험 부여 새도장군 태안 만리포 천안 아우내오이 서산 회포	보령 청라평정 논산 양촌이매골꽃감 금산 허리수통 당진 부리 아산 내이랑	태안 벗가리 부여 신앙친환경
전북	34	남원 농하 원주 서두	진주 원동괴수원 김제 황토 임실 사산너	정읍 내장산 완주 봉서골 순창 전통고추장	익산 이랑 간주 별해는 순창 들뜰골 김제 외갓집 정읍 옥성로청정	군산 간치벌 고창 하진갯벌 완주 등산곶감 진안 미이산골	군산 신시도섬 정읍 대정유기농농역 완주 완장 진안 칠반산구리고을 부안 후촌갈대숲 임실 박사골 김제 남포드넛	전주 학전참깨밭 익산 두어 정읍 좌도풍물농동 남원 용진(*) 순창 산내들(*) 고창 성기북분자(*)	김제 수록골 무주 하늘밭(*) 부안 구름로수(*) 고창 고사리(*)
전남	36	신안 신안배 광양 송월	영광 영광굴비 곡성 대신주말농장 영암 신북괴수원 순천 낙안메이곡	광양 백학동 여수 돌산갯김치 함평 해수찜갯벌 나주 배꽃	여수 거문도 목포 울도지주식김 광양 고로쇠(*) 나주 봉황황도(*) 무안 팔방미인 보성 벌교부농 고흥 명진바다목장	완도 금당도갯벌섬 장흥 천관 강진 읍전 영암 삼로무화과 장성 황룡 화순 능주(*) 해남 두륜산비섯(*)	장흥 키조개 곡성 황등쌀 완도 개메기 여수 참전복게도 보성 득량 무안 월선리예술인촌	진도 소로검정쌀 영암 시종달보는 목포 장이찌 광양 매화 나주 나주평야	진도 점도텔링
경북	42	성주 도흥참외 안동 하회 포항 호미곶 청송 주왕산사과(*) 고령 고령딸기(*)	예천 금당실 영주 풍기인삼 김천 양각자두 영천 영천한약 봉화 춘양목송이 영양 수비산촌 울진 백암온천 영덕 영덕대게	경주 양동민속 울릉 황도구미 의성 모흥황도 상주 은자골 포항 기계장터 구미 금오산찰밭보리(*) 칠곡 동안꽃밭참외(*)	청송 주왕산사이버타운 봉화 청량산비나리 성주 가야산늬색체험 예천 화룡포 군위 군위팔공산농금 칠곡 금남오이꽃동산	문경 새재팔영사과 안동 안동포 영주 소백산단산포도 포항 곡강시금치 의성 의성도종마을	영양 신바위 포항 신광비학산학 영덕 영덕복숭아 경산 금구맛대추 청도 신도계마을발성지	안동 늬전도종 영천 보현산별빛포도 구미 신라불교초전지 김천 황학산반곡포도 상주 모동반계포도	상주 구마이곶감
경남	21	하동 삼신늬차 김해 대동화채	마산 고현미더덕 함안 월촌 거창 서번	사천 고읍단감 창녕 모산 함양 화산	밀양 얼음골사과 남해 지죽갯 합천 아이스딸기 함안 철북괴수	하동 옥종딸기 김해 천산참외 거제 구조라관평어촌	밀양 평리산대추 거제 어구낙시 하동 악양대봉감	창녕 성곡친환경 거창 가남	동영 학림섬
제주	11	서귀포 상예	제주 김녕해녀 서귀포 안토산	제주 영평	서귀포 월평화채 서귀포 한남감귤	제주 저지예술	서귀포 감산계곡 제주 유수암	제주 와흘	서귀포 수산

※ 강원 원주 황둔송계마을은 '00년 강원도·정통부 시범사업으로 구축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였으나, '06.11월 강원도 자체 예산으로 마을홈페이지를 재구축하면서 정보화마을에 포함되어 운영됨.

참고자료2 (성과#1) 정보화마을 우수 운영사례('07.1월)

마을명	유형	주요 성과
봉화 춘양목 송이 마을	전자 상거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운영위원회 중심의 철저한 상품/고객관리로 고객 만족 극대화 - 고객 '감성' 마케팅 실시로 전자상거래 소득증가 - 전자상거래(98배 증가) : 4백만원('02.9~'03.8) → 3억9천('06.1~'06.10) - 가구당 누적 수익금액 약 16백만원(참여농가수 : 30가구) - 판매 수익금(5%)을 마을 정보센터 이용기금으로 조성 ○ 홈페이지 : 게시판건수 : 6,555건, 누적조회수 : 70만회, 댓글수 : 27천여건 ○ 회원수 : 외지사이버 회원 611명, 단골 구매회원 : 4,563여명 ○ 인텔 지원 자금을 활용하여 마을 공동명의 민박 1개동 건립
삼척 너와 마을	체험 관광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별 농외 소득의 대폭 증가로 소득향상 : 650만원('03) → 1,525만원('05) - 체험프로그램 운영 실적('02.4~) : 121회, 2,064명, 75,270천원 - 전자상거래 판매 실적('03.9 ~) : 3,527만원(녹용, 송이, 포도, 너와) - 너와펜션 운영('04.4~) : 29,520명, 181,700천원 - 마을 캠프 운영 실적('04.9 ~) : 15회, 1,922명, 25,130천원 ※ 2006년 목표 : 27,800명 방문, 546,700천원 판매(가구별 9,800천원) ○ 간접적인 효과 - 주민 마인드 변화로 활기가 넘치는 마을로 변모 : 노동일수 120일 → 200일 증가 - 가구당 소득의 농외소득 비중 증가 : 25%('03) → 38%('04) → 45%('05) - 주민들이 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자긍심 제고 : 가장 못사는 마을 → 부러움의 대상
영월 슬익는마 을	커뮤니티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로 지역공동체 형성 - 활성화 동호회 17개 ('06. 12. 8 현재) - 동호회 관련 누적 게시물 13,680개 - 2006년 동호회 게시물 평균 등록건수 326개 - 주요 동호회 : 주천농협주부대학, 주여농, 고향인빌뉴스 - 주기적인 오프라인 모임을 병행하여 주민 및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고 결속력을 다짐 ○ 마을 게시판 및 블로그에서의 활동도 매우 활발함 - 블로그 글등록 월평균 100건, 답글수 70건 ○ 마을의 대소사를 동호회, 블로그, 마을게시판을 활용하여 등록하고 외부에 널리 알림 ○ 주부 커뮤니티의 활동이 강함

참고자료3

(성과#2) 정보화마을 외국인 방문 현황

연번	일자	방문국	인원	방문자	비고
총 방문객수 : 69회 70여개국 1,308명 방문 ('07.4월 현재)					
'07년 방문객수 : 4회 3개국 47명					
69	07.04.25	브루나이	7	총리실 부장관, 차관, 부차관 등	경기 이천 도예마을
68	07.04.10	일본	10	일본 지방공무원(사카이시)	경기 연천 38선마을
67	07.03.06	파라과이	20	파라과이 중앙 공무원	경기 이천 도예마을
66	07.02.12	일본	10	일본 국제협력단	경기 여주 그린투어마을
'06년 방문객수 : 30회 70개국 548명					
65	06.12.18	베트남	9	베트남 내무차관 등 공무원	경기 연천 38선마을
64	06.12.12	이라크	16	지방행정과정 연수 공무원	경기 이천 도예마을
63	06.11.29	중국	3	농업관련 공무원	제주 저지예술마을
62	06.11.28	중국	3	농업관련 공무원	경기 이천 도예마을
61	06.11.27	파라과이	11	경제기획청 공무원 등	경기 여주 해바라기마을
60	06.11.16	아프리카 등 19개국	21	공무원	전북 완주 완창마을
59	06.10.24	UN DESA 및 개도국 7개국	21	고위 공무원	경기 화성 해바라기마을
58	06.10.21	APEC 소속국가 12개국	23	중간 관리자급 공무원	경기 이천 도예마을
57	06.10.19	APEC 소속국가 12개국	23	중간 관리자급 공무원	경기 수원 노송하숙마을
56	06.10.17	인텔본사	3	고위 직원	경기 화성 해바라기마을
55	06.08.29	아시아 11개국	21	외교관	경기 화성 가시리마을
54	06.08.15	베트남	14	차관, 고위공무원	경기 여주 해바라기마을
53	06.08.11	아세안 13개국	26	농업 부처 공무원	경기 여주 그린투어마을
52	06.07.21	중남미 12개국	18	외교부, 국영통신사, 총리실 등	충남 금산 추부곶윗마을
51	06.06.24	베트남	15	감사원 감사원 직원	경기 여주 해바라기마을
50	06.06.21	중국	20	중앙/지방부처 공무원 부조장 등	경기 화성 가시리마을
49	06.06.01	멕시코	3	중앙부처 규제개혁국장 등	경기 화성 가시리마을
48	06.05.25	UN	11	UN정보통신평가단 전자정부 과장 등	경기 연천 38선마을
47	06.05.11	중국	14	공무원	청사방문(정보화마을 소개 및 시연)
46	06.04.29	중국	20	심양 공무원단체	강원 횡탄/송계정보화마을,기술센터 등
45	06.04.23~24	중국	4	섬서성 TV / 여행사 관계자	강원 횡탄/송계정보화마을,기술센터 등
44	06.04.21	방글라데시	6	고위 공무원(국장급)	경기 화성 가시리마을
43	06.04.10	중국	5	호남 위성 TV	강원 횡탄/송계정보화마을,기술센터 등
42	06.04.06	중국	80	중국 인바운드 여행사	매호리매화마을, 횡탄송계마을
41	06.03.04	중국	74	무한, 심양 3개 공무원단체	강원 횡탄/송계정보화마을,기술센터 등
40	06.03.14	중국	8	길림성 관계자	강원 횡탄/송계정보화마을,기술센터 등
39	06.03.29	중국	32	충칭시 공무원	경북도 정보화마을
38	06.03.27	중국	16	지린성 안투현 공무원	충북 단양 한드미마을
37	06.03.17	중국	14	산둥성 연태시 부서기	제주 와흘리마을
36	06.03.14	중국	14	산둥성 연태시 부서기	강원 횡탄마을
'05년 방문객수 : 10회 20여개국 252명					
'04년 방문객수 : 15회 37여개국 156명					
'03년 방문객수 : 3회 10여개국 52명					
'02년 방문객수 : 7회 20여개국 253명					

② 주민등록제도 개선 관련

-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5월부터 주민등록 말소절차를 강화하여 제3자의 무리한 말소 요구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우선 금융감독위원회·대법원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채권추심업무와 공시송달절차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말소제도가 제3자의 편의를 위해 남용되지 않도록 했다.
 - 현재는 채권확보를 위한 제3자의 말소 요구가 있을 때 최고·공고절차를 거친 후 주민등록이 수시로 말소되었지만, 앞으로는 정기적인 일제정리기간에만 집중적이고 엄격한 사실조사를 통해 말소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7월부터는 가족 간에도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 중이다.
 - 가족 간의 등초본 발급으로 인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 노출,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등의 문제가 있어서
 - 읍면동 사무소에 본인 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 제한 신청을 하면 가족이 요청한 경우에도 스스로의 의사에 반하는 등초본 발급을 막을 수 있어서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 아울러 금년 12월부터 전국 어느 읍면동 사무소에서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 매년 훼손, 분실,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재발급 되는 주민등록증은 260만 건에 달하며, 현재까지는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발급 가능하였으나
 - 그 동안의 주민등록전산 일원화 작업성과를 바탕으로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본인이 원하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어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주민등록제도가 주민생활의 기초가 되고 모든 민원의 기본이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편의를 도모하는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강조하면서
 - 지난 3월에 총 239만명이 참여한 **주민번호 클린캠페인**은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킨 계기가 되었고,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인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와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시범발급제**는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안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 :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법무부의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동향

I. 제출 배경

-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사범 분석결과, 정치관계법 개혁, 수사기관 및 선관위의 철저 단속, 국민의식 변화 등으로 전체적으로는 17대 총선 이후 확립되기 시작한 공명선거풍토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 유급화, 기초의원 정당추천제 도입,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의 팽배 등에 따라 후보자등록 실시 전까지는 제3회 지방선거에 비하여 입건·구속자수가 급증하는 등 선거초반 훨씬 과열·타락
- 따라서, 선거의 조기과열 및 타락을 부추기는 정당공천 관련 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서는 수사기관의 엄정한 단속과 아울러 공직선거법 개정 등 제도개선 필요

II. 개정의견 주요내용

① 당선무효규정 관련

□ 후보자 친족의 선거범죄에 대한 당선무효 확대

- 현행규정(제265조)
 - 현행법상 후보자의 친족 중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에 의한 일정한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됨
- 문제점
 -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동공동체를 형성하여 선거운동을 한 후보자의 일부 친족이 중대한 선거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후보자의 당선에 영향이 없으므로 당선무효가 되지 않는 친족을 이용한 선거범죄 빈발

【 후보자 친척들의 선거범죄 현황 】

17대 총선과 4회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아닌 친척들의 선거범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받은 사례가 11건 있었고, 그 중 6건이 후보자나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선거범죄를 저지른 경우였음('06. 10. 23. 현재)

● 개정의견

-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외에 '후보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당선무효 범죄주체를 확대

□ 당선자 외 후보자의 공무담임권 제한

● 현행규정(제266조 제2항)

- 후보자 중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비용초과지출 등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가 된 자, 즉, '당선자'만 '당해 보궐선거 등'의 후보자가 될 수 없음

● 문제점

- 당선자 외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등이 특정한 선거범죄로 일정 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후보자의 재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선거운동 지휘·관여자의 선거참여를 일정기간 배제한다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음
- 또한 연좌제로 당선무효되는 경우 '당해 선거의 보궐선거 등'에 대한 입후보만 제한할 뿐 다른 선거에는 참여를 허용하고 있어, 당선무효된 자들이 선거구를 이전하거나 다른 공직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 자유롭게 입후보하는 실정

● 개정의견

- 당선자 외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등이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공무담임권을 제한하여,

- '당해 선거의 보궐선거' 뿐만 아니라 '그 임기동안 치러지는 같은 공직자를 선출하기 위한 일체의 보궐선거 등과 같은 기간동안 선거구가 겹치는 지역에서 치러지는 다른 공직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도록 제한

2] 벌칙 및 금지규정 관련

공천헌금 제공 및 수수행위 처벌규정 신설

● 현행규정

- 공직선거법에는 공천헌금 제공 및 수수행위 관련 처벌규정이 없고, 정치자금법에 이와 관련된 금지규정을 두고 있음

● 문제점

-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의율할 수 없고, 금품 수령자가 기부행위 상대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도 처벌할 수 없음

국회의원의 동생에게 공천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였으나 그것이 (개인적인 부채변제를 위한 것일 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도404 판결)

● 개정의견

- 공직선거법에 정당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및 지시·권유·요구·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법정형은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준하여 규정

선거브로커 처벌규정 정비

● 현행규정(제231조)

- 공직선거법 제231조 제1항에서 선거브로커가 금품을 살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 문제점

- 선거브로커가 선거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 규정이 있으나, 선거브로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수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처벌규정이 없음
- 선거브로커가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인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수죄로 처벌할 수 없고, 기부행위 상대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부행위로도 처벌할 수 없음

정치컨설팅업체를 경영하며 ○○당 ○○구청장 후보로 공천을 받아 주겠다고면서 8,400여만원을 기부받은 선거브로커가 '경선선거인'이 아니어서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의율 못하고, 다만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로 보아 기부행위로 처벌 【북부지검】

● 개정의견

- 공직선거법에 선거브로커가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령하는 행위, 선거브로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및 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법정형은 제231조의 다른 죄에 준하여 규정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 금지에 당내경선운동 포함

● 현행규정(제60조, 제85조)

-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85조 제1항에서 공무원 등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선거운동 개념에는 당내 경선운동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도1165 판결)되므로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 문제점

-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이 선거운동에 관여할 경우 **공정성 시비**를 일으키고, **정치적 중립의무가 훼손되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금지한 것인데, 당내경선에서도 이러한 점이 문제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도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투표를 권유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으나, 위 선거에 당내경선은 포함되지 않음
- 실제로 제4회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들을 당내경선운동에 동원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문제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으나 처벌하지 못함

○○당 ○○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동료 공무원들에게 경선대의원 명부를 교부하며 현직 시장의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하도록 지시한 행위를 불입건 처분 【충주지청】

● 개정의견

-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85조 제1항의 선거운동에 당내경선운동을 포함시켜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도 금지

□ 거소투표 간섭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 정비

● 현행규정(제242조)

- 공직선거법 제242조의 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에 거소투표 간섭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문제점

- 거소투표자로 하여금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거소투표와 관련된 대표적 범죄로서, **범행유형상 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로 처벌함이 상당하나** 동조의 투표소에 부재자투표소만 포함되어 있어 거소투표 간섭행위 등을 동조로 처벌할 수 없음

- 투표의 비밀침해죄(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는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모두 투표를 마친 뒤 **비밀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고, 거소투표는 선거일 이전에 실시되므로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금지(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로도 의술하기 어려움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에게 배송된 투표용지를 함께 보면서 손가락으로 특정 후보자를 가리키며 그에 기표하도록 한 투표유도 사례를 투표의 비밀침해죄로 기소 【순천지청】

⇒ 조문의 체계상 투표의 간섭 및 방해죄로 의술함이 상당

● 개정의견

- 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의 투표소에 '거소투표의 경우 거소투표하는 장소'를 포함

□ 음식물·물품 수수자 50배 과태료 규정 개정

● 현행규정(제261조)

- 공직선거법 제261조에 기부행위 금지에 위반하여 음식물·물품을 수수한 자는 **50배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

● 문제점

-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1~4항의 과태료 규정이나 다른 법률 규정과는 달리 **징액형식**으로 되어 있어 운용상 경직성
- 형사처벌되는 현금 수수자의 **벌금형 상한이 500만원**인 반면 과태료는 5,000만원까지 가능하여 **형벌에 비하여 과중**
- 공직선거법 제262조 제1항은 선거사범 자수자에 대해 **필요적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과태료에는 특례 조항이 없음
- 또한 음식물·물품의 가액에 관계없이 과태료 처분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억원이 넘는 **고가물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5,000만원까지의 과태료 처분만 가능하고 형사처벌은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의원 사건에서 핸드백 등 1,400만원 상당을 수수한 사례를 기부행위로 기소, 1·2·3심 과태료 사안이라는 이유로 무죄 선고

● 개정의견

- 과태료를 '50배 이하'로 하고 주례행위의 과태료를 '100만원'으로 하향하며, 자수자 감면규정을 신설
- 고가 물품 수수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
- ※ 형사처벌 대상은 물품 가액의 50배가 과태료 상한인 5,000만원을 넘는 물품, 즉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으로 정함이 상당

3] 기 타

□ 기초의원 등 정당추천 배제

● 현행규정(제47조)

- 현행법상 기초의원을 포함, 모든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에 대하여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 가능

● 문제점

- 제4회 지방선거사범 수사결과,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의 개혁, 수사기관 및 선관위의 철저한 단속 등 범정부적 대처, 국민의식 변화 등으로 17대 총선 이후 확립되기 시작한 공명선거풍토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제3회 지방선거 ('02. 11. 13)	제4회 지방선거 ('06. 10. 31.)	증감율
입건 인원	6,587	6,402	▽ 2.8%
구속 인원	399	380	▽ 4.8%

-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 실시 전까지는 제3회 지방선거에 비하여 입건자수가 95.0%, 구속자수는 43.2%나 급증하여 선거초반에는 훨씬 과열·타락

기 간	입건자(구속)	증 감 율
전 체 (~10.31.)	6,402(380)	▽ 2.8%(▽ 4.8%)
후 보 자 등 록 전 (~5.15.)	1,781(106)	▲95.0%(▲43.2%)
후 보 자 등 록 후 (5.16.~10.31.)	4,621(274)	▽18.6%(▽15.7%)

- 이는 특정 정당의 공천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는 데 기인하며, 수도권·영남 지역에서만 92명(77.9%)이 공천비리로 입건되었고, 특정 정당의 당원인 피의자가 80명으로 전체의 67.8%나 입건된 점이 이를 반증함

【지역별 입건자수】

구 분	서울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입 건	31	20	8	1	8	41	9

【정당별 입건자수】

정 당	□□당	○○당	△△당	◇◇당	무소속
입 건	.	80	19	.	19

- 즉, 당내경선에 대비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 확보 과정에서 당비를 대납해 주고, 국회의원 등 정당추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력자에게 공천현금을 기부하는 현상 만연 의미
- 선거의 조기과열 및 타락을 부추기는 정당공천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

※ 4회 지방선거의 공천현금사범 118명 중 기초단체장 선거관련이 47명, 기초의원 선거관련이 39명으로 합계 86명(72.88%)에 이룸

- 개정의견

-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 규정 추가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정비

- 현행규정(제262조의3)

- 현행법상 선관위만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법률적 근거가 있고,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법률상 근거는 없음

- 문제점

- 검찰은 법무부령을, 경찰은 경찰청훈령을 각 근거로 하여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가 없으므로 예산확보 등에 애로가 있음
- 또한, 검찰, 경찰도 선관위의 지급기준을 대부분 원용하고 있으나 각 기관의 성격상 포상금 지급요건이 일부 다르므로 (선관위는 검찰 고발시, 검찰·경찰은 기소시 포상금 지급) 신고자의 입장에서 형평성 문제 제기 가능
- 실무상으로 검찰, 경찰 및 선관위에 중복 신고를 하는 경우 이중 지급하는 경우도 발생 가능

- 개정의견

- 자발적인 제보를 통해 공천헌금 등 은밀한 선거범죄를 엄단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선거범죄를 신고한 경우도 선관위에서 일괄하여 포상금 지급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와의 관계 명확화

- 현행규정

- 현행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후 6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임

- 문제점

- 선거일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선거법상 공소시효와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

예를 들어 2010년 실시될 제5회 지방선거사범이 2006. 6. 1. 발생하고 일반 공소시효가 3년인 경우, 일반 공소시효는 2009. 5. 31. 완성되나, 선거법에 의하면 2010년 선거일로부터 6월 후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완성되므로 어느 것을 적용할지 논란 제기 가능

- 개정의견

- 선거법상 공소시효보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한다는 규정 신설

[자료출처 : 법무부, <http://moj.go.kr/>]

부록 : 행복한 책 읽기

	<p>도서명 : 에너지버스 저자명 : 존 고든 출판사 : 쌤앤파커스 출판년 : 2007년 페이지 : 223 가 격 : 10,000원</p>
--	---

지쳐 있는 나, 그리고 당신에게는 ‘에너지 버스’가 필요하다!

다른 비즈니스 우화와 다르게 ‘에너지 버스’는 마치 독자 자신이 주인공과 함께 에너제틱하고 활기 넘치는 버스에 동승한 듯한 놀라운 영감을 준다. 그리고 ‘에너지’를 키워드로 해서 긍정적이고 파워 넘치는 삶으로 변화하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메시지를 전해준다. 한 장 한 장 페이지를 넘기는 동안, 독자는 주인공과 함께 울고 웃으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무한한 위안과 격려, 그리고 새로운 힘과 동력을 충전 받게 될 것이다.

삶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누구나 인생에서 위기를 맞는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는 어떤 사람이건 조직이건 회사건 팀이건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공 시나리오를 그려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 이 책은 그 강력한 힘을 만들어내는 원천을 어디서 찾을 것인지, 그리고 그 꺼져 있던 엔진의 시동을 어떻게 다시 가동시킬 것인지 명쾌하게 그리고 있다.

리더, 세일즈 전문가, 민간단체, 학교, 운동선수에 이르기까지 수만 명의 삶에 기적 같은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줬던 에너지 전도사, 존

고든은 이 ‘에너지 버스’라는 놀라운 스토리를 통해 100만 볼트 파워 충전이라도 받은 듯 불끈 힘이 솟아오르고 긍정적인 목적지를 향해 솟아오르는 방법을 알려준다. 정체에 빠진 팀, 매너리즘에 빠진 일상, 의욕을 잃은 조직, 서로에게 지쳐 있는 가족 모두에게 ‘펑!’ 하고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

이제, ‘에너지 버스’에 올라 타, 유쾌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드라이브 하라. ‘에너지 버스’만 있다면, 인생에서 두려워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행복한 인생을 위한 10가지 ‘에너지 버스’ 룰

1. 당신 버스의 운전사는 당신 자신이다.
2. 당신의 버스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열망’, ‘비전’, 그리고 ‘집중’이다.
3. 당신의 버스를 ‘긍정 에너지’라는 연료로 가득 채워라.
4. 당신의 버스에 사람들을 초대하라, 그리고 목적지를 향한 당신의 비전을 공유하라.
5. 버스에 타지 않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6. 당신의 버스에 ‘에너지 뱀파이어 탑승 금지’ 표지판을 붙여라.
7. 승객들이 당신의 버스에 타고 있는 동안, 그들을 때료시킬 열정과 에너지를 뿜어라.
8. 당신의 승객들을 사랑하라.
9. 목표를 갖고 운전하라.
10. 버스에 타고 있는 동안 즐겨라.

[자료출처 : 인터넷서점]